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이 지난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의 주요 골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소양함양과 제도이해 등의 기본교육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높은 기술등급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신설)하고 환경경영체제 인증 가산점을 조정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반야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를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제5호중 “1종시설물”을 “시설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 제목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각각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을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으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7조의3(중전의 제3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제38조의20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를 제39조의6으로 하고,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



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2항중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공사(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인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를 착공하기 전에”를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46조의4제1항제2호중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을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46조의4제2항 각호의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지정된”을 “등록한”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의4제3항 전단중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을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5제1항중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를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46조의7(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

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 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제47조의5제3항 본문중 “1급 및 2급”을 “1급·2급·3급 및 4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제51조제1항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주무관청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중 “감리원의 업무”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제52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제4항(중전의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공능력평가결과”를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별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우수건설업자 지정)”을“(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일까지”를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중 “없는 자”를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공고일부터”를 “지정연도 5월 1일부터”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우수건설업자”를 각각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별표 1 제1호의 기술자격자란, 학력·경력자란 및 경력자란중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자로서”, “졸업한 후”를 각각 “졸업한 자로서”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 가목중 “취득한 자를 말한다.”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로 하며, 동란 나목중 “해당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해당 전공

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동란 라목중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자”를 “복무한 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술사란의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별표 1 제3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국토개발란중 “조경” 다음에 각각 “지적”을 신설하고, 동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안전관리란중 “소방설비” 다음에 각각 “가스”를 신설하며, 동호의 기술사란·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의 산업응용란중 “공정관리” 다음에 각각 “품질관리”를 신설하고, 동호의 교통란 다음에 화공·세라믹란 및 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공·세라믹		화공	
섬유		방직	방직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기준(표 1)
3.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능력에 대한 기준(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를”을



(표 1)

등 급	제작장면적(m <sup>2</sup> )		가조립장면적(m <sup>2</sup> )		계약전력(kW)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1,000	600	50	50
2급	4,000	3,000	1,500	-	750	450	50	30
3급	2,000	1,000	700	-	400	250	15	8
4급	500	400	-	-	-	-	8	-

※ 비고

1. 제작장 :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가건물
2. 계약전력 : 최근 3월간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전력
3. 기중기 : 공장안의 천정주행크레인(폴리앗크레인을 포함한다)

“책임감리등을”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책임감리를”을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동표 제3호의 위반행위란중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것을 묵인한 때 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로 하고, 동표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33조 제1항 제8호	3월
--	----------------	----

별표 7에 제1호의2란·제6호의2란 및 제6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10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를”을 각각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동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중 “책임감리용역”을 “책임감리등의 용역”으로 한다.

1의 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이하
6의 2.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6의 3.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이하

(표 2)

등급	제작능력	
	교량분야	건축분야
1급	· 모든 교량	· 모든 건축물
2급	· 일반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mm - SM490급 강재 : t≤50mm ·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육교 (특수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mm - SM490급 강재 : t≤25mm ·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육교 (특수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mm - SM490급 강재 : t≤16mm ·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 비교

1. 특수교량은 현수교 · 사장교 · 아치교 · 트러스교 등의 교량과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 · 사장교 · 아치교 · 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당해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공장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장의 철강구조물 제작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 제37조의3(중전의 제37조의2) · 제39조의5 · 제52조제4항(중전의 제52조제2항) · 제54조의10 ·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중전의 제37조의 2) · 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 석 감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감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또는 건축사</li> <li>•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감리사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li>•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 비고

-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5)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54조제1항관련)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5억원 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 콘크리트테스트햄머 • 철근탐지기 • 도막두께측정기 • 소음측정기 • 목재함수율측정기 • 타일인발시험기
토목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 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 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건축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 풍압풍속계
설비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1억원 이상	• 초음파유량계 • 회전속도계 • 진동측정계 • 소음측정기

※ 비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 등록기준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